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416 발의연월일: 2025. 3. 27.

발 의 자 : 엄태영 · 이만희 · 정동만

이달희 • 박덕흠 • 조지연

권영진 • 서천호 • 신동욱

김재섭 의원(10인)

제안이유

전기차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폐차, 리콜, 교체 등으로 사용을 마친전기차 배터리 발생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안정적인 배터리 공급망 확보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음. 이에 따라 사용이 종료된 배터리를 원래 용도로 재제조 및 타 용도로 재사용하거나 금속을 추출하여 재활용하는 등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이 새로운 산업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행법은 사용 후 배터리에 대한 성능평가, 안전성 확보등 관리체계가 부재하여 사용 후 배터리 신산업을 육성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전기차 등에 장착된 구동축전지의 사용이 종료되는 경우 구동축전지의 성능평가를 의무화하여 재제조, 재사용, 재활용으로 용도를구분하고, 배터리 재제조를 위한 사업자 등록 및 안전 관리체계를 정립하여 사용후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

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전기자동차등의 소유자가 전기자동차등에서 구동축전지를 분리하 기 전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구동축전지 성능평가를 받도록 하 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구동축전지 성능 및 안전성을 평가하여 재제 조, 재사용, 재활용으로 분류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함(안 제35 조의13 신설)
- 나. 전기자동차등의 사용후 배터리를 그 부속품 교체 등 수리를 거쳐 전기자동차등의 구동축전지로 제작·조립하고자 하는 경우 제30조 의2제2항에 따른 부품제작자등으로 등록하도록 함(안 제35조의16 신설)
- 다. 재제조 배터리를 전기자동차등에 장착하려는 경우 유통 전 안전검사등을 받도록 하고, 재제조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자동차등의 소유자는 재제조 배터리의 정기 안전검사를 받도록 함(안 제35조의17 신설)
- 라. 사용후 배터리를 보관 또는 운송하려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자동차제작자등 등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 장비 등의 요건을 규정함 (안 제35조의18 신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호의7 및 제1호의8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의7. "사용후 배터리"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및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이하 "전기자동차등"이라 한다)에 장착되어 그 사용이 종료된 구동축전지를 말한다.
- 1의8. "재제조 배터리"란 제35조의13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 재제조 등급으로 평가된 사용후 배터리를 그 부속품 교체 등 수리를 거쳐 제작·조립한 전기자동차등의 구동축전지를 말한다.
- 법률 제20298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30조의3제1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0. 제35조의17제3항을 위반하여 유통 전 안전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전기자동차등을 판매한 경우
- 제3장의4(제35조의13부터 제35조의18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의4 사용후 배터리의 안전관리

제35조의13(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성능평가) ① 전기자동차등의 소유 자(제13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전기자동차등의 소

유자를 갈음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자동차해체재활용 업자를 말한다)는 사용후 배터리를 전기자동차등으로부터 분리하려 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기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사용후 배터리의 성능 및 안전에 관한 평가(이하 "성능평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률 제1779 7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전기자동차의 소유자가 해당 자동차의 배터리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자가 성능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기자동차등으로부터 사용후 배터리를 분리한 후 성능평가를 받을 수 있다.
- 1. 제3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제작 결함의 시정으로 구동축전 지가 회수된 경우: 자동차제작자등
- 2. 제3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무상수리로 구동축전지가 회수된 경우: 자동차제작자등
- 3. 자동차사고 등으로 해당 구동축전지가 더 이상 전기자동차등에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보험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보험업 을 영위하는 자
- 4. 전기자동차등의 소유자가 구동축전지를 교환하여 해당 구동축전지가 더 이상 전기자동차등에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전기자동차

등의 소유자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성능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성능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평가를 할 때에는 사용후 배터리의 성능 및 안전성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환경부장관 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등급으로 구분하여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 전기자동차등의 구동축전지 용도로 사용 가능한 경우: 재제조 등 급
- 2. 전기자동차등의 구동축전지의 용도가 아닌 전기에너지를 저장하는 축전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전기에너지 저장매체로 용도로 사용 가능한 경우: 재사용 등급
- 3. 전기에너지를 저장하는 축전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전기에너지 저장매체로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활용 등급
- ⑤ 누구든지 성능평가 결과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성능평가의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 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제35조의14(성능평가대행자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교통 안전공단을 성능평가를 대행하는 자(이하 "성능평가대행자"라 한다)

- 로 지정하여 구동축전지 성능평가와 그 결과의 통지를 대행하게 할수 있다.
- ② 성능평가대행자의 시설·장비 등의 기준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제35조의15(성능평가대행자에 대한 지정의 취소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평가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 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수 있다.
 - 1.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2. 자산상태의 불량 등의 사유로 그 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 제35조의16(재제조사업자의 등록) 전기자동차등의 사용후 배터리를 재제조 배터리로 제작·조립하고자 하는 자는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부품제작자등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 제35조의17(재제조 배터리가 장착된 전기자동차등의 유통 전 안전검사 등) ① 재제조 배터리가 장착된 전기자동차등을 판매하려는 자동차 제작자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 게 유통 전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② 전기자동차등의 소유자는 그 전기자동차등의 구동축전지를 재제조 배터리로 교체하여 운행하려는 경우에는 그 운행 전에 국토교통

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운행 전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유통 전 안전검사 또는 제2항에 따른 운행 전 안전검사(이하 "유통 전 안전검사등"이라 한다)에 합격하지아니한 전기자동차등은 판매 또는 운행할 수 없다. 다만, 운행 전안전검사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전기자동차등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유통 전 안전검사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⑤ 유통 전 안전검사등의 기준과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⑥ 재제조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자동차등의 소유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재제조 배터리의 정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정기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제35조의18(사용후 배터리의 취급) 사용후 배터리를 보관 또는 운송 등을 하려는 다음 각 호의 자는 시설, 장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 1. 제13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를 갈음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 2. 제30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동차제작자등

- 3. 제35조의13제2항제3호에 따른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
- 4. 제53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동차정비업자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임시검사를,"을 "임시검사를, 제2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5조의17제2항에 따른 운행 전 안전 검사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35조의17제2항에 따른 운행 전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

제46조제1항 중 "제44조제1항"을 "제35조의14, 제44조제1항"으로, "자동차검사대행자"를 "성능평가대행자, 자동차검사대행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해당 자동차검사대행자"를 "해당성능평가대행자, 자동차검사대행자"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의2 및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35조의13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에 필요한 평가 항목 중 일 부를 생략하여 평가한 경우

2의3. 제35조의13제4항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제72조제1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성능평가대행자

법률 제20298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74조제1항 본문 중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를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성능평가대행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35조의17제3항을 위반하여 유통 전 안전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전기자동차등을 판매한 자

제75조제1호 중 "제30조의6제1항"을 "제30조의6제1항, 제35조의15"로 한다.

법률 제20298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7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내압용기재검사"를 "내압용기재검사, 제35조의13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 제35조의17제3항에 따른 유통 전 안전검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의6 및 제10호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6. 제35조의13제3항에 따라 성능평가를 신청하는 자

10의7. 제35조의17제1항에 따라 유통 전 안전검사 또는 같은 조 제2 항에 따라 운행 전 안전검사를 신청하는 자

제77조의2제3호의4 중 "35조의8"을 "제35조의8"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의5 및 제3호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5. 제35조의14에 따른 성능평가 대행업무

3의6. 제35조의17에 따른 유통 전 안전검사등 및 정기 안전검사업무 법률 제20298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81조에 제20호의9 및 제20호의10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의9. 제35조의13제5항을 위반하여 구동축전지 성능평가 결과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20의10. 제35조의18에 따른 기준을 갖추지 아니하고 사용후 배터리 를 보관 또는 운송한 자 제84조제3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제35조의1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성능평가를 받지 아 니한 자

제84조제4항제15호의4 및 제15호의5를 각각 제15호의5 및 제15호의6 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5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의4. 제35조의17제3항을 위반하여 운행 전 안전점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전기자동차등을 운행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동축전지 성능평가에 관한 적용례) ① 제35조의13제1항 본 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3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전기 자동차등의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전기자동차등에 장착된 구동축전 지부터 적용한다.

- ② 제35조의13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제35조의13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이 법 시행 이후 제작 결함의 시정조치 계획을 공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2. 제35조의13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이 법 시행 이후 자동 차제작자등이 무상수리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3. 제35조의13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 이 법 시행

- 이후 전기자동차등에 장착된 구동축전지가 교환되어 더 이상 전기 자동차등에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3조(배터리 재제조 사업자 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16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제조 배터리를 제작·조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4조(유통 전 안전검사 및 정기 안전검사에 관한 적용례) ① 제35조의17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제조 배터리를 전기자동차등에 장착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1. 제35조의17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 이 법 시행 이후 재제조 배 터리가 장착된 전기자동차등을 제작·조립하여 판매하려는 경우부 터 적용한다.
 - 2. 제35조의17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 이 법 시행 이후 전기자동차 등에 장착된 구동축전지를 재제조 배터리로 교환하여 운행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② 재제조 배터리가 장착된 전기자동차등의 소유자가 이 법 시행이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는 경우 제35조의17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기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의6. (생 략)	1. ~ 1의6. (현행과 같음)
<u><신 설></u>	<u>1</u> 의7. "사용후 배터리"란 「환
	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
	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및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
	른 하이브리드자동차(이하
	"전기자동차등"이라 한다)에
	장착되어 그 사용이 종료된
	<u>구동축전지를 말한다.</u>
<u><신 설></u>	<u>1의8. "재제조 배터리"란 제35</u>
	조의13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
	재제조 등급으로 평가된 사용
	후 배터리를 그 부속품 교체
	등 수리를 거쳐 제작・조립한
	전기자동차등의 구동축전지를
	말한다.
2. ~ 14. (생략)	2. ~ 14. (현행과 같음)
법률 제20298호 자동차관리법	법률 제20298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0조의3(자동차 또는 자동차부	제30조의3(자동차 또는 자동차부
품의 제작 또는 판매 등의 중지	품의 제작 또는 판매 등의 중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 차제작자등, 부품제작자등 또는 제30조의5제3항 및 제34조의3 제2항에 따라 성능 및 품질을 인증받은 대체부품 또는 튜닝부 품의 제작사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작・조립・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작・ 조립・수입 또는 판매를 중지하 여야 한다.

1. ~ 9. (생 략) <신 설>

②·③ (생 략) <u><신 설></u>

<신 설>

등) ①
· 1. ~ 9. (현행과 같음)
10. 제35조의17제3항을 위반하
여 유통 전 안전검사에 합격
하지 아니한 전기자동차등을
판매한 경우
②・③ (현행과 같음)
제3장의4 사용후 배터리의
안전관리
제35조의13(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성능평가) ① 전기자동차등의
소유자(제13조제2항에 따라 자
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전기자

동차등의 소유자를 갈음하여 말

소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를 말한 다)는 사용후 배터리를 전기자 동차등으로부터 분리하려는 경 우에는 이를 분리하기 전에 국 토교통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사용후 배터리의 성능 및 안전 에 관한 평가(이하 "성능평가" 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률 제17797호 대기환경보전 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전기자동차의 소유자가 해 당 자동차의 배터리를 지방자치 단체의 장에게 반납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 는 자가 성능평가를 받아야 한 다. 이 경우 전기자동차등으로 부터 사용후 배터리를 분리한 후 성능평가를 받을 수 있다. 1. 제3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1. 제31조제1항 또는 제3항에따른 제작 결함의 시정으로구동축전지가 회수된 경우: 자

동차제작자등

- 2. 제3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무상수리로 구동축전지가 회 수된 경우: 자동차제작자등
- 3. 자동차사고 등으로 해당 구 동축전지가 더 이상 전기자동 차등에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보험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
- 4. 전기자동차등의 소유자가 구 동축전지를 교환하여 해당 구 동축전지가 더 이상 전기자동 차등에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전기자동차등의 소유자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성능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성능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평가 를 할 때에는 사용후 배터리의 성능 및 안전성을 국토교통부장 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환 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 준에 따라 평가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등급으로 구분하여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신청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 1. 전기자동차등의 구동축전지용도로 사용 가능한 경우: 재제조 등급
- 2. 전기자동차등의 구동축전지의 용도가 아닌 전기에너지를 저장하는 축전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전기에너지 저장매체로 용도로 사용가능한 경우: 재사용 등급
- 3. 전기에너지를 저장하는 축전 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전기에너지 저장매체로 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활 용 등급
- ⑤ 누구든지 성능평가 결과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성능평가의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14(성능평가대행자의 지

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한

<신 설>

<신 설>

<신 설>

국교통안전공단을 성능평가를 대행하는 자(이하 "성능평가대 행자"라 한다)로 지정하여 구동 축전지 성능평가와 그 결과의 통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성능평가대행자의 시설·장 비 등의 기준 및 지정 절차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

제35조의15(성능평가대행자에 대한 지정의 취소 등) 국토교통부 장관은 성능평가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수 있다.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1.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2. 자산상태의 불량 등의 사유로 그 업무를 계속하는 것이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경우

제35조의16(재제조사업자의 등록) 전기자동차등의 사용후 배터리 <신 설>

를 재제조 배터리로 제작·조립 하고자 하는 자는 제30조의2제2 항에 따른 부품제작자등으로 등 록하여야 한다.

제35조의17(재제조 배터리가 장착 된 전기자동차등의 유통 전 안 전검사 등) ① 재제조 배터리가 장착된 전기자동차등을 판매하 려는 자동차제작자등은 국토교 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유통 전 안 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② 전기자동차등의 소유자는 그 전기자동차등의 구동축전지를 재제조 배터리로 교체하여 운행 하려는 경우에는 그 운행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운행 전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유통 전 안전검사 또는 제2항에 따른 운행 전 안전검사(이하 "유통 전 안전검사등"이라 한다)에 합 격하지 아니한 전기자동차등은 판매 또는 운행할 수 없다. 다 만, 운행 전 안전검사를 받기 위

한 목적으로 전기자동차등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시험 대행자로 하여금 유통 전 안전 검사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유통 전 안전검사등의 기준 과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렁으로 정한 다.
- ⑥ 재제조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자동차등의 소유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재제조 배터리의 정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43조제 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정기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5조의18(사용후 배터리의 취급) 사용후 배터리를 보관 또는 운송 등을 하려는 다음 각 호의 자는 시설, 장비 등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한다.

1. 제13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

<신 설>

제37조(점검 및 정비 명령 등) ① | 저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동차 소유자에게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 • 정비 · 검사 또는 원상복구를 명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 및 제4 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 사를,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 기검사 또는 제43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를, 제4호 또는 제5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3조제 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각 각 명하여야 한다.

1. • 2. (생략)

소유자를 갈음하여 말소등록
을 신청하려는 자동차해체재
<u>활용업자</u>
2. 제30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동차제작자등
3. 제35조의13제2항제3호에 따
른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
4. 제53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동차정비업자
제37조(점검 및 정비 명령 등) ①
임시검사
를, 제2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제35조의17제2항에 따른
운행 전 안전검사를,
<u>,</u>
1 • 2 (현행과 같음)

<신 설>

- 3. ~ 5. (생략)
- ② ~ ④ (생 략)
- 제46조(검사기술인력의 직무 등)
 - ① 제44조제1항, 제44조의2제1항, 제45조의2제1항, 제45조제1항 및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받는 <u>자동차</u>검사대행자, 종합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 및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이하 "검사기술인력"이라 한다)의 구분 및 직무 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기술 인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해당 자</u> 동차검사대행자, 종합검사대행 자, 지정정비사업자 또는 종합 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게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해임을 명하거나 일정기간 그 직무를 정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종합검사대행자나 종합검

2의2. 제35조의17제2항에 따른
운행 전 안전검사를 받지 아
<u>니한 자동차</u>
3. ~ 5.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6조(검사기술인력의 직무 등)
① 제35조의14, 제44조제1항
<u>성능평</u>
가대행자, 자동차검사대행자
②
<u>해당 성</u>
능평가대행자, 자동차검사대행
<u> 자</u>

사지정정비사업자에게 그 검사 기술인력의 해임 또는 직무를 정지하게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신 설>

<신 설>

3. ~ 9. (생략)

③ ~ ⑤ (생 략)

제72조(보고·검사) ① 국토교통 부장관, 환경부장관(종합검사와 관련된 업무에만 해당한다), 시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은 자동차의 관리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그 관리 또는 업무 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 다.

1. ~ 8. (생 략)

<u><신 설></u>

9. ~ 16. (생략)

· 1.·2. (현행과 같음)
2의2. 제35조의13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에 필요한 평가 항목
중 일부를 생략하여 평가한
<u>경우</u>
2의3. 제35조의13제4항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를 통지하지 아
<u>니한 경우</u>
3. ~ 9.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72조(보고·검사) ①
1. ~ 8. (현행과 같음)
8의2. 성능평가대행자
9. ~ 16.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법률 제20298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74조(과징금의 부과) ① 국토교 7 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은 제21조, 제45조 의3제1항, 제47조제5항 또는 제 66조제1항에 해당되어 해당 등 록번호판발급대행자, 자동차검 사대행자, 종합검사대행자, 택 시미터전문검정기관 또는 자동 차관리사업자에 대한 업무 또는 사업정지처분(이하 "정지처분" 이라 한다)을 하여야 하는 경우 로서 그 정지처분이 일반 이용 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 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할 수 있다. 다만, 종합검사와 관련된 종합검사대행자의 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경우에는 5천 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생략)

(2) ~ (4) (연행과 같음)
법률 제20298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74조(과징금의 부과) ①
등
로번호판발급대행자, 성능평가
대행자
<u>-11 0 / 1</u>
<u>.</u>
<u>.</u>
② (현행과 같음)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매출액의 100분의 2(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억원으로 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수 있다.

1. ~ 6. (생 략) <u><신 설></u>

④ ~ ⑥ (생 략)

- 제75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시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21조, 제30조의6제1항, 제4
 5조의3제1항 및 제47조제5항
 에 따른 지정취소

2. ~ 7. (생략)

법률 제20298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76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

(3)
<u>.</u>
1. ~ 6. (현행과 같음)
<u>7. 제35조의17제3항을 위반하여</u>
유통 전 안전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전기자동차등을 판매
<u>한 자</u>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75조(청문)
/ TOユ() 世 /
1 -레이어크 시아네네큐 -레이드
1 <u>제30조의6제1항, 제35</u>
<u> 조의15</u>
2. ~ 7. (현행과 같음)
법률 제20298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 교통부령(종합검사지정정비사 업자 및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 업자 지정신청 또는 종합검사 및 이륜자동차검사의 신청의 경 우에는 공동부령을 말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 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수 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국토교 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 장・군수・구청장이 제30조제3 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동차의 기 술검토 및 안전검사, 제30조의8 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 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성 능시험, 제30조의8제3항(제52조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에 따른 안전성능시험시설 및 안전성능시험의 확인, 제30 조의8제4항(제52조에서 준용하 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적 합성검사, 제30조의9제5항 각 호에 따른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업무,

제32조제3항(제52조에서 준용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동차의 부품 또는 장치의 성 능시험, 제34조의5제3항에 따른 자료 확인, 제35조의6제1항에 따른 내압용기검사, 제35조의7 제1항에 따른 내압용기장착검 사, 제35조의8에 따른 내압용기 재검사, 제44조제1항에 따른 자 동차검사, 제44조의2제1항에 따 른 종합검사, 제45조제1항에 따 른 정기검사,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 제47조제2항에 따른 택시미터의 검정, 제51조 의2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검 사, 제51조의3제1항에 따른 이 륜자동차 정기검사, 제77조제6 항에 따른 압류의 해제에 필요 한 사무의 대행에 관한 업무, 자 기인증의 면제, 기계 · 기구의 정밀도검사 및 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제공, 제77조제7항에 따 른 전자적 방법(「전자정부법」 에 따른 전자문서와 전자화문서 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 청받은 등록에 관한 사무, 제77

<u>내압용기재검사, 제35조의</u>
13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 제35
조의17제3항에 따른 유통 전 안
전검사등

조제8항에 따른 자동차 튜닝에 관한 승인, 제77조제10항에 따 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행 또는 위탁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대 행 또는 위탁받은 자가 정하는 수수료를 그 대행 또는 위탁받 은 자에게 내야 한다.

1. ~ 10의4. (생략) <신 설>

<신 설>

11. ~ 18. (생 략)

제7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제7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 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 원으로 본다.

1. ~ 3의3. (생략) 3의4. 35조의8에 따른 내압용기 재검사업무

<신 설>

1. ~ 10의5. (현행과 같음)
10의6. 제35조의13제3항에 따라
성능평가를 신청하는 자
10의7. 제35조의17제1항에 따라
유통 전 안전검사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운행 전 안전
검사를 신청하는 자
11. ~ 18. (현행과 같음)
레르크 이어(바퀴 카스레카 코브이

1. ~ 3의3. (현행과 같음)

3의4. 제35조의8---<u>3의5. 제35조의14에 따른 성능</u>

<신 설>

4. ~ 9. (생 략) 법률 제20298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20의8. (생 략) <신 설>

<신 설>

21. ~ 28. (생 략) 제84조(과태료) ①·② (생 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8. (생략)

평기	나 대	했	업	무
O ′		O		- 1

 3의6.
 제35조의17에 따른 유통

 전 안전검사등 및 정기 안전

 검사업무

4. ~ 9. (현행과 같음) 법률 제20298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81조(벌칙)	
	_

1. ~ 20의8. (현행과 같음)
20의9. 제35조의13제5항을 위반
하여 구동축전지 성능평가 결과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20의10. 제35조의18에 따른 기준을 갖추지 아니하고 사용후 배터리를 보관 또는 운송한 자

21. ~ 28. (현행과 같음) 제84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 9. (생략)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 15의3. (생 략) <u><신 설></u>

15의4. • 15의5. (생략)

16. ~ 24. (생략)

⑤ • ⑥ (생 략)

8의2. 제	35조의13제	1항 또는	- 제
2항을	위반하여	성능평기	가를
받지 ㅇ	<u> </u>		

- 9. (현행과 같음)
- (<u>4</u>) -----

-----.

1. ~ 15의3. (현행과 같음)

15의4. 제35조의17제3항을 위반하여 운행 전 안전점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전기자동차등을 운행한 자

15의5. · 15의6. (현행 제15호의4 및 제15호의5와 같음)

16. ~ 24. (현행과 같음)

⑤·⑥ (현행과 같음)